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82
----------	----

제안년월일 2003. 3. 19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성숙한 운영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회운영 위원 연수시 의회운영과 관련된 제도와 규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토론한 결과

의장·부의장 선출방법 보완, 의안 및 결산심사 기능강화, 도정의 긴급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제도 신설 등 의회운영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의회가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고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제안하게 된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장·부의장 선거에 5분이내의 정견 및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8조제1항)

나. 회기 임박하거나 회기중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시간 부족으로 의안의 졸속심사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안전접수기일을 신설함. (안 제20조제2항)

- 다.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시정연설 또는 제안설명”으로 자구 수정함. (안 제68조제1항)
- 라. 의회에서 결산심사 결과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함. (안 제72조제3항)
- 마. “긴급현안질문”제도 도입에 따른 도정질문 제도 보완을 위해 「도정에 대한 질문」 조항을 분리 신설함. (안 제73조의2)
- 바. 도정과 관련한 중요한 각종 긴급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집행부와 함께 간밀히 협력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돌출된 현안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질문요구서 제출과 실시여부, 해당공무원의 출석, 질문 시간 및 기타 방법을 정하고자 함. (안 제73조의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라. 기타 참고자료(긴급현안질문)
 - 타 시·도 회의규칙 발췌사본 : 붙임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당일 5분이내의 정견 및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 제1항 중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로, “제안설명”을 “시정연설 또는 제안설명”으로 한다.

제72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후 도지사,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등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 교육감 및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도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일 본회의 개회시간 4일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답변일 본회의 개회시간 2일전 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6인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도정과 관련하여 긴급히 발생한 중요특정 문제를 대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질문(이하 “긴급현안 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본회의 개회시간 24시간 전까지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③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인원은 3명 이내로 하며 질문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 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⑥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및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8조(예산안 심의)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u>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u>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p>	<p>제68조(예산안 심의)① ······ <u>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 시정연설 또는 제안설명 ······</u> ····· ····· ····· ····· ·····</p>
<p>② - ③ (생 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72조(결산의 심사) ① ~ ② (생 략)</p>	<p>제72조(결산의 심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후 도지사,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등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 교육감 및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73조(도지사등의 출석요구)</p> <p>① ~ ③ (생략)</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한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 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일 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답변시간 2일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3조(도지사등의 출석요구)</p> <p>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p>

(신설)

제73조의2(도정에 대한 질문)

- ① 본회의는 회기중 도정 및 지방교육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다.
-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일 본회의 개회시간 4일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교육
감은 답변일 본회의 개회시간 2일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73조의3(긴급현안질문)</u>(①)의 원은 <u>6인이상의 차성으로 회기중 도정과 관련하여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문제를 대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u></p> <p><u>②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본회의 개회시간 24시간 전까지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속부하여야 한다.</u></p> <p><u>③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u></p> <p><u>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도지사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u></p>

현 행	개 정 안
	<p><u>⑤</u>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인원은 3인 이내로 하며 질문의 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p> <p><u>⑥</u>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p>

관 계 법 규

【 지방자치법 】

第63條 (會議規則) 地方議會는 會議의 운영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

【 국 회 법 】

第122條의3 (緊急懸案質問) ①議員은 20人이상의 賛成으로 會期中 懸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對象으로 政府에 대하여 質問 (이하 이 條에서 "緊急懸案質問"이라 한다)을 할 것을 議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懸案質問을 요구하는 議員은 그 이유와 質問要旨 및 출석을 요구하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을 기재한 質問要求書를 本會議開議 24時間전까지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③議長은 質問要求書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議事日程을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정한다. 다만, 議長은 필요한 경우 本會議에서 그 실시여부를 表決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議長의 決定 또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은 때에는 해당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대한 출석요구의 議決이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

⑤緊急懸案質問時間은 總 120分으로 한다. 다만,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⑥緊急懸案質問을 할 때의 議員의 質問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補充質問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緊急懸案質問의 節次등에 관하여 이 條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第122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본조신설 1994.6.28]

타시 · 도회의규칙

【광주광역시의회】

제73조의3(긴급현안질문)①의원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된 중요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교육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 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 초과할 수 없다.

⑦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형편에 의하여 질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항의 질문시간을 질문권이 있는 다른 의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⑧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9.5.7>

【경기도의회】

제92조(긴급현안질문) ①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 (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 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삭제 95. 5. 18>

⑤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긴급현안질문의 절차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5. 4. 27]

【경상남도의회】

- 제73조의3(긴급현안질문)①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질문(이하"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1>
- ②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 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1>
-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도지사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 ⑤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6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6.21>